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8.29.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206-1695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기도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8.29.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수원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과밀억제권역)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8.29.(금)	2025.09.08.(월)	2025.09.09.(화)	2025.09.10.(수)	2025.09.18.(목)	2025.09.20.(토)~ 2025.09.23.(화)	2025.09.29.(월)~ 2025.10.01.(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 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 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 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 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 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 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5/mangpo/>)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O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8.29.(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4.08.2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9.08.(월)	2025.09.09.(화)	2025.09.10.(수)	2025.09.18.(목)	2025.09.20.(토)~ 2025.09.23.(화)	2025.09.29.(월)~ 2025.10.01.(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견본주택 (10:00~17:00)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922)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

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 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름)

대상증서	공급계약서, 추가선택품목계약서,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계약서)				
납부기한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납부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금액	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 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 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수원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최초 당첨자발표일(2025.09.18.)로부터 1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공동주택과-35406호(2025. 08. 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8층, 지상 최고 40층 3개동 총 615세대 중 일반분양 615세대

[특별공급 222세대(기관추천 34세대, 다자녀가구 61세대, 신혼부부 78세대, 노부모부양 19세대, 생애최초 3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30년 02월 예정 (공정, 인허가변경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365	01	062.6526	62	62.6526	25.3632	88.0158	52.9942	141.0100	10.2537	36	4	-	8	-	3	15	21	1
	02	084.1327A	84A	84.1327	32.7859	116.9186	71.1630	188.0816	13.7691	170	17	17	39	6	15	94	76	5
	03	084.1327B	84B1	84.1327	32.7859	116.9186	71.1630	188.0816	13.7691	136	13	13	31	4	12	73	63	4
			84B2	84.1327	32.7859	116.9186	71.1630	188.0816	13.7691									
	04	100.8688A	100A1	100.8688	37.9212	138.7900	85.3191	224.1091	16.5082	203	-	24	-	7	-	31	172	6
			100A2	100.8688	37.9212	138.7900	85.3191	224.1091	16.5082									
			100A3	100.8688	37.9212	138.7900	85.3191	224.1091	16.5082									
			100A4	100.8688	37.9212	138.7900	85.3191	224.1091	16.5082									
	05	100.3826B	100B	100.3826	38.9954	139.3780	84.9080	224.2860	16.4286	70	-	7	-	2	-	9	61	2
	합 계									615	34	61	78	19	30	222	393	18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084.1327B(84B1, 84B2) 및 100.8688A(100A1, 100A2, 100A3, 100A4)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내부구조(전용 부분)는 동일하나, 침실1 앞 발코니의 면적 및 구조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 배치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084.1327B 청약 신청 시 동·호수 배정은 약식표기 84B1, 84B2에 해당되는 동·호수에서 임의배정 되며, 특정타입(84B1, 84B2)의 선택 청약이 불가한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100.8688A 청약 신청 시 동·호수 배정은 약식표기 100A1, 100A2, 100A3, 100A4에 해당되는 동·호수 중에서 임의배정 되며, 특정타입(100A1, 100A2, 100A3, 100A4)의 선택 청약이 불가한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승강기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생활지원센터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공용면적(주거, 기타)에는 주거 이용 목적의 동선 공유 등 사용이 불가피한 지하층 및 지상 저층 공용 복도 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계약면적에 포함됩니다.

※ 공용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최하층이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하부 비주거층이 있을 경우, 비주거층 또는 PIT층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 주택형	062.6526	084.1327A	084.1327B		100.8688A				100.3826B
약식표기	62	84A	84B1	84B2	100A1	100A2	100A3	100A4	100B
세 대 수	36	170	102	34	100	33	34	36	70
해당 동(라인)	103동 (1호)	101동 (1호) 102동 (5호, 6호) 103동 (3호, 6호)	101동 (2호, 6호) 103동 (2호)	102동 (4호)	101동 (3호, 5호) 102동 (2호)	101동 (4호)	102동 (1호)	103동 (4호)	102동 (3호) 103동 (5호)

-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청약 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표기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혼동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아파트임편 색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사업주체의 계획변경,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동 (라인)	층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5%)	2차(5%)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계약 시	1개월 이내	2026.03.18.	2026.10.14.	2027.05.12.	2028.02.16.	2028.09.13.	2029.04.18.	
62	36	103동 1호	4층	1	218,110,000	543,490,000	-	761,600,000	38,080,000	38,080,000	76,160,000	76,160,000	76,160,000	76,160,000	76,160,000	76,160,000	228,480,000
			5~6층	2	222,920,000	555,480,000	-	778,400,000	38,920,000	38,920,000	77,840,000	77,840,000	77,840,000	77,840,000	77,840,000	77,840,000	233,520,000
			7~10층	4	227,760,000	567,540,000	-	795,300,000	39,765,000	39,765,000	79,530,000	79,530,000	79,530,000	79,530,000	79,530,000	79,530,000	238,590,000
			11~20층	9	232,080,000	578,320,000	-	810,400,000	40,520,000	40,520,000	81,040,000	81,040,000	81,040,000	81,040,000	81,040,000	81,040,000	243,120,000
			21~30층	10	249,380,000	621,420,000	-	870,800,000	43,540,000	43,540,000	87,080,000	87,080,000	87,080,000	87,080,000	87,080,000	87,080,000	261,240,000
			31층 이상	10	253,700,000	632,200,000	-	885,900,000	44,295,000	44,295,000	88,590,000	88,590,000	88,590,000	88,590,000	88,590,000	88,590,000	265,770,000
84A	33	101동 1호	5~6층	2	314,870,000	784,630,000	-	1,099,500,000	54,975,000	54,975,000	109,950,000	109,950,000	109,950,000	109,950,000	109,950,000	109,950,000	329,850,000
			7~10층	4	321,690,000	801,610,000	-	1,123,300,000	56,165,000	56,165,000	112,330,000	112,330,000	112,330,000	112,330,000	112,330,000	112,330,000	336,990,000
			11~20층	9	327,810,000	816,890,000	-	1,144,700,000	57,235,000	57,235,000	114,470,000	114,470,000	114,470,000	114,470,000	114,470,000	114,470,000	343,410,000
			21~30층	10	334,630,000	833,870,000	-	1,168,500,000	58,425,000	58,425,000	116,850,000	116,850,000	116,850,000	116,850,000	116,850,000	116,850,000	350,550,000
			31층 이상	8	340,410,000	848,290,000	-	1,188,700,000	59,435,000	59,435,000	118,870,000	118,870,000	118,870,000	118,870,000	118,870,000	118,870,000	356,610,000
84A	34	102동 5호	4층	1	298,630,000	744,170,000	-	1,042,800,000	52,140,000	52,140,000	104,280,000	104,280,000	104,280,000	104,280,000	104,280,000	104,280,000	312,840,000
			5~6층	2	305,250,000	760,650,000	-	1,065,900,000	53,295,000	53,295,000	106,590,000	106,590,000	106,590,000	106,590,000	106,590,000	106,590,000	319,770,000
			7~10층	4	328,240,000	817,960,000	-	1,146,200,000	57,310,000	57,310,000	114,620,000	114,620,000	114,620,000	114,620,000	114,620,000	114,620,000	343,860,000
			11~20층	9	334,490,000	833,510,000	-	1,168,000,000	58,400,000	58,400,000	116,800,000	116,800,000	116,800,000	116,800,000	116,800,000	116,800,000	350,400,000
			21~30층	10	341,450,000	850,850,000	-	1,192,300,000	59,615,000	59,615,000	119,230,000	119,230,000	119,230,000	119,230,000	119,230,000	119,230,000	357,690,000
			31층 이상	8	347,340,000	865,560,000	-	1,212,900,000	60,645,000	60,645,000	121,290,000	121,290,000	121,290,000	121,290,000	121,290,000	121,290,000	363,870,000

84A	31	102동 6호	7~10층	4	324,980,000	809,820,000	-	1,134,800,000	56,740,000	56,740,000	113,480,000	113,480,000	113,480,000	113,480,000	113,480,000	113,480,000	340,440,000
			11~20층	9	331,160,000	825,240,000	-	1,156,400,000	57,820,000	57,820,000	115,640,000	115,640,000	115,640,000	115,640,000	115,640,000	115,640,000	346,920,000
			21~30층	10	338,040,000	842,360,000	-	1,180,400,000	59,020,000	59,020,000	118,040,000	118,040,000	118,040,000	118,040,000	118,040,000	118,040,000	354,120,000
			31층 이상	8	343,880,000	856,920,000	-	1,200,800,000	60,040,000	60,040,000	120,080,000	120,080,000	120,080,000	120,080,000	120,080,000	120,080,000	360,240,000
84A	36	103동 3호	4층	1	289,730,000	721,970,000	-	1,011,700,000	50,585,000	50,585,000	101,170,000	101,170,000	101,170,000	101,170,000	101,170,000	101,170,000	303,510,000
			5~6층	2	296,140,000	737,960,000	-	1,034,100,000	51,705,000	51,705,000	103,410,000	103,410,000	103,410,000	103,410,000	103,410,000	103,410,000	310,230,000
			7~10층	4	318,480,000	793,620,000	-	1,112,100,000	55,605,000	55,605,000	111,210,000	111,210,000	111,210,000	111,210,000	111,210,000	111,210,000	333,630,000
			11~20층	9	324,520,000	808,680,000	-	1,133,200,000	56,660,000	56,660,000	113,320,000	113,320,000	113,320,000	113,320,000	113,320,000	113,320,000	339,960,000
			21~30층	10	331,280,000	825,520,000	-	1,156,800,000	57,840,000	57,840,000	115,680,000	115,680,000	115,680,000	115,680,000	115,680,000	115,680,000	347,040,000
			31층 이상	10	337,010,000	839,790,000	-	1,176,800,000	58,840,000	58,840,000	117,680,000	117,680,000	117,680,000	117,680,000	117,680,000	117,680,000	353,040,000
84A	36	103동 6호	4층	1	311,200,000	775,500,000	-	1,086,700,000	54,335,000	54,335,000	108,670,000	108,670,000	108,670,000	108,670,000	108,670,000	108,670,000	326,010,000
			5~6층	2	318,080,000	792,620,000	-	1,110,700,000	55,535,000	55,535,000	111,070,000	111,070,000	111,070,000	111,070,000	111,070,000	111,070,000	333,210,000
			7~10층	4	324,980,000	809,820,000	-	1,134,800,000	56,740,000	56,740,000	113,480,000	113,480,000	113,480,000	113,480,000	113,480,000	113,480,000	340,440,000
			11~20층	9	331,160,000	825,240,000	-	1,156,400,000	57,820,000	57,820,000	115,640,000	115,640,000	115,640,000	115,640,000	115,640,000	115,640,000	346,920,000
			21~30층	10	338,040,000	842,360,000	-	1,180,400,000	59,020,000	59,020,000	118,040,000	118,040,000	118,040,000	118,040,000	118,040,000	118,040,000	354,120,000
			31층 이상	10	343,880,000	856,920,000	-	1,200,800,000	60,040,000	60,040,000	120,080,000	120,080,000	120,080,000	120,080,000	120,080,000	120,080,000	360,240,000
84B1	33	101동 2호	5~6층	2	314,870,000	784,630,000	-	1,099,500,000	54,975,000	54,975,000	109,950,000	109,950,000	109,950,000	109,950,000	109,950,000	109,950,000	329,850,000
			7~10층	4	321,690,000	801,610,000	-	1,123,300,000	56,165,000	56,165,000	112,330,000	112,330,000	112,330,000	112,330,000	112,330,000	112,330,000	336,990,000
			11~20층	9	327,810,000	816,890,000	-	1,144,700,000	57,235,000	57,235,000	114,470,000	114,470,000	114,470,000	114,470,000	114,470,000	114,470,000	343,410,000
			21~30층	10	334,630,000	833,870,000	-	1,168,500,000	58,425,000	58,425,000	116,850,000	116,850,000	116,850,000	116,850,000	116,850,000	116,850,000	350,550,000
			31층 이상	8	340,410,000	848,290,000	-	1,188,700,000	59,435,000	59,435,000	118,870,000	118,870,000	118,870,000	118,870,000	118,870,000	118,870,000	356,610,000
84B1	33	101동 6호	5~6층	2	318,080,000	792,620,000	-	1,110,700,000	55,535,000	55,535,000	111,070,000	111,070,000	111,070,000	111,070,000	111,070,000	111,070,000	333,210,000
			7~10층	4	324,980,000	809,820,000	-	1,134,800,000	56,740,000	56,740,000	113,480,000	113,480,000	113,480,000	113,480,000	113,480,000	113,480,000	340,440,000
			11~20층	9	331,160,000	825,240,000	-	1,156,400,000	57,820,000	57,820,000	115,640,000	115,640,000	115,640,000	115,640,000	115,640,000	115,640,000	346,920,000
			21~30층	10	338,040,000	842,360,000	-	1,180,400,000	59,020,000	59,020,000	118,040,000	118,040,000	118,040,000	118,040,000	118,040,000	118,040,000	354,120,000
			31층 이상	8	343,880,000	856,920,000	-	1,200,800,000	60,040,000	60,040,000	120,080,000	120,080,000	120,080,000	120,080,000	120,080,000	120,080,000	360,240,000
84B1	36	103동 2호	4층	1	298,630,000	744,170,000	-	1,042,800,000	52,140,000	52,140,000	104,280,000	104,280,000	104,280,000	104,280,000	104,280,000	104,280,000	312,840,000
			5~6층	2	305,250,000	760,650,000	-	1,065,900,000	53,295,000	53,295,000	106,590,000	106,590,000	106,590,000	106,590,000	106,590,000	106,590,000	319,770,000
			7~10층	4	311,830,000	777,070,000	-	1,088,900,000	54,445,000	54,445,000	108,890,000	108,890,000	108,890,000	108,890,000	108,890,000	108,890,000	326,670,000
			11~20층	9	317,760,000	791,840,000	-	1,109,600,000	55,480,000	55,480,000	110,960,000	110,960,000	110,960,000	110,960,000	110,960,000	110,960,000	332,880,000
			21~30층	10	341,450,000	850,850,000	-	1,192,300,000	59,615,000	59,615,000	119,230,000	119,230,000	119,230,000	119,230,000	119,230,000	119,230,000	357,690,000
			31층 이상	10	347,340,000	865,560,000	-	1,212,900,000	60,645,000	60,645,000	121,290,000	121,290,000	121,290,000	121,290,000	121,290,000	121,290,000	363,870,000
84B2	34	102동 4호	4층	1	286,810,000	714,690,000	-	1,001,500,000	50,075,000	50,075,000	100,150,000	100,150,000	100,150,000	100,150,000	100,150,000	100,150,000	300,450,000
			5~6층	2	293,130,000	730,470,000	-	1,023,600,000	51,180,000	51,180,000	102,360,000	102,360,000	102,360,000	102,360,000	102,360,000	102,360,000	307,080,000
			7~10층	4	315,240,000	785,560,000	-	1,100,800,000	55,040,000	55,040,000	110,080,000	110,080,000	110,080,000	110,080,000	110,080,000	110,080,000	330,240,000
			11~20층	9	321,260,000	800,540,000	-	1,121,800,000	56,090,000	56,090,000	112,180,000	112,180,000	112,180,000	112,180,000	112,180,000	112,180,000	336,540,000
			21~30층	10	327,930,000	817,170,000	-	1,145,100,000	57,255,000	57,255,000	114,510,000	114,510,000	114,510,000	114,510,000	114,510,000	114,510,000	343,530,000
			31층 이상	8	333,600,000	831,300,000	-	1,164,900,000	58,245,000	58,245,000	116,490,000	116,490,000	116,490,000	116,490,000	116,490,000	116,490,000	349,470,000
100A1	33	101동 3호	5~6층	2	358,830,000	812,881,818	81,288,182	1,253,000,000	62,650,000	62,650,000	125,300,000	125,300,000	125,300,000	125,300,000	125,300,000	125,300,000	375,900,000
			7~10층	4	366,590,000	830,463,636	83,046,364	1,280,100,000	64,005,000	64,005,000	128,010,000	128,010,000	128,010,000	128,010,000	128,010,000	128,010,000	384,030,000
			11~20층	9	373,580,000	846,290,909	84,629,091	1,304,500,000	65,225,000	65,225,000	130,450,000	130,450,000	130,450,000	130,450,000	130,450,000	130,450,000	391,350,000
			21~30층	10	381,340,000	863,872,727	86,387,273	1,331,600,000	66,580,000	66,580,000	133,160,000	133,160,000	133,160,000	133,160,000	133,160,000	133,160,000	399,480,000
			31층 이상	8	387,920,000	878,800,000	87,880,000	1,354,600,000	67,730,000	67,730,000	135,460,000	135,460,000	135,460,000	135,460,000	135,460,000	135,460,000	406,380,000

100A1	33	101동 5호	5~6층	2	362,490,000	821,190,909	82,119,091	1,265,800,000	63,290,000	63,290,000	126,580,000	126,580,000	126,580,000	126,580,000	126,580,000	126,580,000	379,740,000
			7~10층	4	370,310,000	838,900,000	83,890,000	1,293,100,000	64,655,000	64,655,000	129,310,000	129,310,000	129,310,000	129,310,000	129,310,000	129,310,000	387,930,000
			11~20층	9	377,380,000	854,927,273	85,492,727	1,317,800,000	65,890,000	65,890,000	131,780,000	131,780,000	131,780,000	131,780,000	131,780,000	131,780,000	395,340,000
			21~30층	10	385,230,000	872,700,000	87,270,000	1,345,200,000	67,260,000	67,260,000	134,520,000	134,520,000	134,520,000	134,520,000	134,520,000	134,520,000	403,560,000
			31층 이상	8	391,880,000	887,745,455	88,774,545	1,368,400,000	68,420,000	68,420,000	136,840,000	136,840,000	136,840,000	136,840,000	136,840,000	136,840,000	410,520,000
100A1	34	102동 2호	4층	1	347,550,000	787,318,182	78,731,818	1,213,600,000	60,680,000	60,680,000	121,360,000	121,360,000	121,360,000	121,360,000	121,360,000	121,360,000	364,080,000
			5~6층	2	355,250,000	804,772,727	80,477,273	1,240,500,000	62,025,000	62,025,000	124,050,000	124,050,000	124,050,000	124,050,000	124,050,000	124,050,000	372,150,000
			7~10층	4	362,920,000	822,163,636	82,216,364	1,267,300,000	63,365,000	63,365,000	126,730,000	126,730,000	126,730,000	126,730,000	126,730,000	126,730,000	380,190,000
			11~20층	9	369,820,000	837,800,000	83,780,000	1,291,400,000	64,570,000	64,570,000	129,140,000	129,140,000	129,140,000	129,140,000	129,140,000	129,140,000	387,420,000
			21~30층	10	377,500,000	855,181,818	85,518,182	1,318,200,000	65,910,000	65,910,000	131,820,000	131,820,000	131,820,000	131,820,000	131,820,000	131,820,000	395,460,000
			31층 이상	8	384,030,000	869,972,727	86,997,273	1,341,000,000	67,050,000	67,05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402,300,000
100A2	33	101동 4호	5~6층	2	355,250,000	804,772,727	80,477,273	1,240,500,000	62,025,000	62,025,000	124,050,000	124,050,000	124,050,000	124,050,000	124,050,000	124,050,000	372,150,000
			7~10층	4	362,920,000	822,163,636	82,216,364	1,267,300,000	63,365,000	63,365,000	126,730,000	126,730,000	126,730,000	126,730,000	126,730,000	126,730,000	380,190,000
			11~20층	9	369,820,000	837,800,000	83,780,000	1,291,400,000	64,570,000	64,570,000	129,140,000	129,140,000	129,140,000	129,140,000	129,140,000	129,140,000	387,420,000
			21~30층	10	377,500,000	855,181,818	85,518,182	1,318,200,000	65,910,000	65,910,000	131,820,000	131,820,000	131,820,000	131,820,000	131,820,000	131,820,000	395,460,000
			31층 이상	8	384,030,000	869,972,727	86,997,273	1,341,000,000	67,050,000	67,05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402,300,000
100A3	34	102동 1호	4층	1	340,330,000	770,972,727	77,097,273	1,188,400,000	59,420,000	59,420,000	118,840,000	118,840,000	118,840,000	118,840,000	118,840,000	118,840,000	356,520,000
			5~6층	2	347,830,000	787,972,727	78,797,273	1,214,600,000	60,730,000	60,730,000	121,460,000	121,460,000	121,460,000	121,460,000	121,460,000	121,460,000	364,380,000
			7~10층	4	374,060,000	847,400,000	84,740,000	1,306,200,000	65,310,000	65,310,000	130,620,000	130,620,000	130,620,000	130,620,000	130,620,000	130,620,000	391,860,000
			11~20층	9	381,190,000	863,554,545	86,355,455	1,331,100,000	66,555,000	66,555,000	133,110,000	133,110,000	133,110,000	133,110,000	133,110,000	133,110,000	399,330,000
			21~30층	10	389,100,000	881,454,545	88,145,455	1,358,700,000	67,935,000	67,935,000	135,870,000	135,870,000	135,870,000	135,870,000	135,870,000	135,870,000	407,610,000
			31층 이상	8	395,830,000	896,700,000	89,670,000	1,382,200,000	69,110,000	69,110,000	138,220,000	138,220,000	138,220,000	138,220,000	138,220,000	138,220,000	414,660,000
100A4	36	103동 4호	4층	1	351,070,000	795,300,000	79,530,000	1,225,900,000	61,295,000	61,295,000	122,590,000	122,590,000	122,590,000	122,590,000	122,590,000	122,590,000	367,770,000
			5~6층	2	358,830,000	812,881,818	81,288,182	1,253,000,000	62,650,000	62,650,000	125,300,000	125,300,000	125,300,000	125,300,000	125,300,000	125,300,000	375,900,000
			7~10층	4	366,590,000	830,463,636	83,046,364	1,280,100,000	64,005,000	64,005,000	128,010,000	128,010,000	128,010,000	128,010,000	128,010,000	128,010,000	384,030,000
			11~20층	9	373,580,000	846,290,909	84,629,091	1,304,500,000	65,225,000	65,225,000	130,450,000	130,450,000	130,450,000	130,450,000	130,450,000	130,450,000	391,350,000
			21~30층	10	381,340,000	863,872,727	86,387,273	1,331,600,000	66,580,000	66,580,000	133,160,000	133,160,000	133,160,000	133,160,000	133,160,000	133,160,000	399,480,000
			31층 이상	10	387,920,000	878,800,000	87,880,000	1,354,600,000	67,730,000	67,730,000	135,460,000	135,460,000	135,460,000	135,460,000	135,460,000	135,460,000	406,380,000
100B	34	102동 3호	4층	1	348,890,000	790,372,727	79,037,273	1,218,300,000	60,915,000	60,915,000	121,830,000	121,830,000	121,830,000	121,830,000	121,830,000	121,830,000	365,490,000
			5~6층	2	356,590,000	807,827,273	80,782,727	1,245,200,000	62,260,000	62,260,000	124,520,000	124,520,000	124,520,000	124,520,000	124,520,000	124,520,000	373,560,000
			7~10층	4	364,300,000	825,272,727	82,527,273	1,272,100,000	63,605,000	63,605,000	127,210,000	127,210,000	127,210,000	127,210,000	127,210,000	127,210,000	381,630,000
			11~20층	9	371,260,000	841,036,364	84,103,636	1,296,400,000	64,820,000	64,820,000	129,640,000	129,640,000	129,640,000	129,640,000	129,640,000	129,640,000	388,920,000
			21~30층	10	378,960,000	858,490,909	85,849,091	1,323,300,000	66,165,000	66,165,000	132,330,000	132,330,000	132,330,000	132,330,000	132,330,000	132,330,000	396,990,000
			31층 이상	8	385,520,000	873,345,455	87,334,545	1,346,200,000	67,310,000	67,310,000	134,620,000	134,620,000	134,620,000	134,620,000	134,620,000	134,620,000	403,860,000
100B	36	103동 5호	4층	1	352,440,000	798,418,182	79,841,818	1,230,700,000	61,535,000	61,535,000	123,070,000	123,070,000	123,070,000	123,070,000	123,070,000	123,070,000	369,210,000
			5~6층	2	360,230,000	816,063,636	81,606,364	1,257,900,000	62,895,000	62,895,000	125,790,000	125,790,000	125,790,000	125,790,000	125,790,000	125,790,000	377,370,000
			7~10층	4	368,020,000	833,709,091	83,370,909	1,285,100,000	64,255,000	64,255,000	128,510,000	128,510,000	128,510,000	128,510,000	128,510,000	128,510,000	385,530,000
			11~20층	9	375,040,000	849,600,000	84,960,000	1,309,600,000	65,480,000	65,480,000	130,960,000	130,960,000	130,960,000	130,960,000	130,960,000	130,960,000	392,880,000
			21~30층	10	382,830,000	867,245,455	86,724,545	1,336,800,000	66,840,000	66,840,000	133,680,000	133,680,000	133,680,000	133,680,000	133,680,000	133,680,000	401,040,000
			31층 이상	10	389,440,000	882,236,364	88,223,636	1,359,900,000	67,995,000	67,995,000	135,990,000	135,990,000	135,990,000	135,990,000	135,990,000	135,990,000	407,97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무상으로 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착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동별, 층별, 라인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판매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로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 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 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 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 축소·대출 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들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5.06.27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 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본 서류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본 불가)
- 전산 검색 결과 당첨 사실, 이중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적용된 단지 명칭,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적용된 단지 명칭, 브랜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주택형)			062.6526	084.1327A	084.1327B	100.8688A	100.3826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1	3	3	-	-	7
		서울특별시	1	3	2	-	-	6
		인천광역시	-	1	-	-	-	1
	국가유공자		1	2	2	-	-	5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1	-	-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3	1	-	-	4
	중소기업 근로자		1	4	4	-	-	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수원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	9	7	12	4	32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8	6	12	3	29
신혼부부 특별공급			8	39	31	-	-	7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6	4	7	2	19
생애최초 특별공급			3	15	12	-	-	30
합 계			15	94	73	31	9	22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 시·도 거주자 50% (수원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수원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는 우선 공급 낙첨자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 우선공급(50%)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 수원시 및 경기도 거주자가 우선공급(50%)에서 낙첨된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때에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적용되지 않음(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 상자를 선정함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 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 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7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가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가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8.29.(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 colspan="2">가점구분</th><th>점수</th><th colspan="2">가점구분</th><th>점수</th></tr><tr><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 colspan="2">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 colspan="2">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r><td colspan="2">1년 미만</td><td>2</td><td colspan="2">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tr><td colspan="2">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 colspan="2">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tr><td colspan="2">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 colspan="2">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tr><td colspan="2">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 colspan="2">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tr><td colspan="2">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 colspan="2">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tr><td colspan="2">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 colspan="2">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tr><td colspan="2">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 colspan="2">15년 이상</td><td>32</td></tr><tr><td colspan="2">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 colspan="2"></td><td></td></tr><tr><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 colspan="2">0명</td><td>5</td><td colspan="2">4명</td><td>25</td></tr><tr><td colspan="2">1명</td><td>10</td><td colspan="2">5명</td><td>30</td></tr><tr><td colspan="2">2명</td><td>15</td><td colspan="2">6명 이상</td><td>35</td></tr><tr><td colspan="2">3명</td><td>20</td><td colspan="2"></td><td></td></tr><tr><td rowspan="8">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8">17</td><td colspan="2">6개월 미만</td><td>1</td><td colspan="2">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r><tr><td colspan="2">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 colspan="2">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tr><td colspan="2">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 colspan="2">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tr><td colspan="2">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 colspan="2">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tr><td colspan="2">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 colspan="2">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tr><td colspan="2">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 colspan="2">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tr><td colspan="2">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 colspan="2">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tr><td colspan="2">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 colspan="2">15년 이상</td><td>17</td></tr></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범위 : 3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 <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 <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40%</td><td>60%</td></tr><tr><td>전용면적 85㎡ 초과</td><td>-</td><td>100%</td></tr></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r><td>①무주택기간</td><td>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이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 <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r> <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5-1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2025.09.08.(월) - 청약Home인터넷: 09:00~17:30) - 사업주체건본주택: 10:00~14:00)	• 인터넷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건본주택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922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 경기도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기타지역 : 경기도 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2025.09.09.(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5.09.10.(수) 09:00~17:3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판」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5.09.18.(목) - 확인방법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당첨일로부터 10일간)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5.09.20.(토)~2025.09.23.(화) (10:00~17:00) - 장소 :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견본주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922)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자격검증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 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자격서류 제출 일정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일시 : 2025.09.29.(월)~2025.10.01.(수) (10:00~17:00) - 장소 :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견본주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922)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 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table border="1"> <tr> <td>청약홈</td><td>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9.18.(목) ~ 2025.09.27(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td></tr> <tr> <td>문자</td><td> - 제공일시 : 2025.09.18.(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td></tr> </table>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9.18.(목) ~ 2025.09.27(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9.18.(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9.18.(목) ~ 2025.09.27(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9.18.(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서류 제출 대상자	일정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당첨자 전원	2025.09.20.(토) ~ 2025.09.23.(화) (4일간) 10:00 ~ 17:00	•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건본주택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922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일반공급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8.29.)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자격확인 서류 제출기간에 신청자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신청 내용과 대조 등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검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또한 계약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제출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구분 : 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 발급용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 [발급용도: 아파트 계약용 / 제출처: ㈜대우건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년 이전 출생자 1961.1.1.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대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해당 기관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본인	당사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청약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미혼 확인)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으로 정하여 5년이 경과 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 확인각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입양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이행 확인각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견본주택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7년 이내), 자녀수(태아 포함), 월평균소득 확인(당사 견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과거 변동사항 등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대상자 중 전년도부터 무소득자로 무소득임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신생아 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 확인각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입양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이행 확인각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산입증서류 참고하여 발급
		○	부동산 보유 약약서		• 견본주택 비치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견본주택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건본주택 비치
		○	생애최초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당사 건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하여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과거 변동사항 등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비사업자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대상자 중 전년도부터 무소득자로 무소득 임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신생아 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임신진단서) 제출 : 임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 확인각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입양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이행 확인각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천제 당첨자 자산입증서류 참고하여 발급
		○	부동산 보유 약약서		견본주택 비치
일반공급 (가점제)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견본주택 비치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 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 존·비속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 존·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 체류 증빙서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 전원의 해외 체류 유무 확인 ※ 발급기간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체류국가확인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대리인 제출시	○		위임장	청약자	• 당사 견본주택 비치(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발급구분 : 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 발급용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 [발급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제출처: ㈜대우건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8.2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의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개인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래 안내한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 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	①,② 해당 직장

자 영 업 자		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 직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③ 세무서
자 영 업 자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①②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② 세무서/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등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① 세무서/해당직장
자 영 업 자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등을 공개로 “상세”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세대의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하며,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제 증명 서류는 원본을(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 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③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세무서

- ※ 상기 모든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원본, 직인 날인 필수입니다.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1, 2023년에 소득세 납부한 경우에도 가능
-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경우 직인날인 불필요)
- ※ 소득세 납부 입증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산입증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 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소유증빙)	① 부동산 소유현황(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②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전체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인터넷기소 (www.iros.go.kr) ② 위택스(www.wetax.go.kr) ③ 행정복지센터
	필수 (자산가액 증빙)	① 소유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② 소유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③ 소유부동산이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① 행정복지센터 ② 이택스(etax.seoul.go.kr) ③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격	자산 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 이택스(서울) 및 위택스(서울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외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토지 소유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 주택 외 건축물 중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제출	
	해당자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② 축산업 허가증,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 경우 ③ 종중소유토지 증빙 또는 현장 사진 및 해당 토지이용계획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결과(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②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전국자치단체)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시군구청(또는 위택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천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해당 대상입니다.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를 하여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8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2025.09.29.(월)~2025.10.01.(수) / 3일간 10:00~17:00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건본주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922)	☎031-206-1695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합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사전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사전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홈페이지 서식 게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본인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이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균등납부)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금	수협은행	1010-2706-0735	신한자산신탁(주)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체결 시 세대별로 가상계좌 부여 예정		

- 상기 1차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1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무상으로 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부터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무통장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무통장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계약 체결 시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을 확인 후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지정된 계약기간 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초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수원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계획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증명이 없는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 시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합니다. (당첨자 삭제가 아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아파트는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대출이자납부일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단,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음)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

자는 계약자가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총액은 계약자가 입주지정기간 말일(단 입주지정기간 이전 입주시는 실제입주일)까지 사업주체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시에는 계약서상의 연체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앞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앞선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 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를 따릅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 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앞선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 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서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익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 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고, 계약 가능 일자도 공동주택 계약자분께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발코니 확장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확장 부위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과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에는 외부 창호,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마감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 주택형·위치·층수에 따라 발코니 입면 형태, 창호 크기·위치, 서비스 면적, 채광·환기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외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손잡이 등), 유리 등)이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 대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도 인접 세대와의 배치 조건에 따라 발코니 확장 부위의 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상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활 습관, 실내 습도에 따라 외부 창호의 창틀과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 또는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 확장 외부 창호는 내풍압 등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창호의 규격·유리 사양·창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같은 주택형이라도 층별·위치별 사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도 층별, 위치별로 외부 창호의 사양·크기·분할규격·입면 디자인·개폐 방식·개폐 방향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의 외부 창호(예를 들어 안방 발코니 외부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됩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배수구) 및 선풍통이 설치되며, 위치와 개수는 견본주택과 달리 라인별·층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인접 세대의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에 면한 세대 내부에서는 인접 세대(측면, 상·하층) 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발코니에서는 물 사용이 제한되며, 인접 세대(측면, 상·하층) 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대피 공간,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은 준외부공간으로 단열 및 난방이 적용되지 않아 결로, 결빙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보관 물품 훼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외부 창호 및 난간(외부 창호가 난간 기능을 병행하는 경우 포함)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1) 라이프업 스타일링 옵션

□ 현관 중문

(단위 : 원)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1안	선택형(유상)-2안	금 액		비 고
현관 중문	전타입	미설치	원슬라이딩 자동중문 + 시트판넬	62	2,180,000	-
				84A, 84B1/B2, 100A1/A2/A3/A4, 100B	2,300,000	

- 현관 중문 기본형(1안) 선택 시 중문 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중문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센서 및 스위치의 사양, 위치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서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제 및 변경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공간상의 이유로 배선기구, 스프링클러, 환기 디퓨저, 화재감지기, 조명기구 등의 배치 및 수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단위 : 원)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1안	선택형(유상)-2안	금 액		비 고
벽/바닥 마감재 특화	전타입	바닥 : 전실 강마루(섬유판) 벽 : 실크벽지	바닥 : 전실 광폭 강마루(섬유판) 벽 : 흡착벽지 현관, 복도, 소파 뒷벽 : 시트판넬 복도 1면 간접조명	62	3,080,000	-
				100A1/A2/A3/A4	4,820,000	
		바닥 : 전실 강마루(섬유판) 벽 : 실크벽지	바닥 : 전실 광폭 강마루(섬유판) 벽 : 흡착벽지 복도 아트월 타일 연장 : 포세린타일(600*1200) 현관, 복도, 소파 뒷벽 : 시트판넬 복도 1면 간접조명	84A, 84B1/B2	5,290,000	-
				100B	5,290,000	

- 본공사 시 강마루(섬유판) 및 광폭 강마루(섬유판)의 제조사, 규격 및 시공패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흡착벽지는 도배지가 시공되는 벽 부분에 해당되며, 천장은 제외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 및 평면 옵션에 따라 시공 부위가 상이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복도에 설치되는 간접조명의 규격 및 상세, 형태는 본공사시 접합부 마감품질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현관, 복도, 소파뒷벽의 시트판넬은 설치되지 않으며, 도배로 마감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자재와 동등이상으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 특화

(단위 : 원)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1안	선택형(유상)-2안	금 액		비 고
조명 특화	전타입	기본 조명 스마트스위치 일반형	특화조명기구 : 거실 라인간접등 + 침실1,2,알파룸 엠티등 스마트스위치 고급형	62	2,030,000	-
			특화조명기구 : 거실 라인간접등 + 침실1,2 엠티등 스마트스위치 고급형	62	1,810,000	알파룸 수납 특화 옵션 선택시
		기본 조명 스마트스위치 일반형	특화조명기구 : 거실 라인간접등 + 침실1,2,3 엠티등 스마트스위치 고급형	84A	2,650,000	-
				84B1/B2	2,580,000	-
				100A1/A2/A3/A4	2,420,000	-
				100B	2,500,000	-

- 거실/침실 조명 특화 선택에 따라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거실/침실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의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 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1안)은 기본 조명기구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거실/침실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의 거실, 침실 등의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은 하부면을 비추는 조명 부분만 제공됩니다.
- 거실/침실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은 디밍과 색온도 제어가 가능한 풀터치 고급형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기본형(1안)은 조명 ON/OFF 기능만 가능한 일반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 거실/침실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의 고급형 스마트스위치 중 주방은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 옵션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스위치의 설치 위치에 따라 스마트스위치의 기능 및 형태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에 안내되어 있는 일반형 스마트스위치의 POP 이미지는 샘플 이미지이며, 공간 및 조명 회로에 따라 버튼 수량은 상이합니다.
- 조명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2) 라이프업 수납 옵션

□ 현관 수납특화

(단위 : 원)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1안	선택형(유상)-2안	금 액		비 고
현관 수납특화	전타입	신발장 : 기본형	신발장 특화 : 신발살균기 + 디자인 선반(조명포함) + 신발장 하부 조명	62	730,000	-
				84A, 84B1/B2	740,000	
		신발장 : 기본형 현관창고 : 여닫이도어 + 풀대형 시스템선반	신발장 특화 : 신발살균기 + 디자인 선반(조명포함) + 신발장 하부 조명 현관창고 특화 : 폴딩도어 + 시스템 선반 특화형	100A1/A2/A3/A4	1,490,000	
		신발장 : 기본형 현관창고 : 여닫이도어 + 풀대형 시스템선반	신발장 특화 : 신발살균기 + 디자인 선반/오픈장(조명포함) + 신발장 하부 조명 현관창고 특화 : 폴딩도어 + 시스템 선반 특화형	100B	1,600,000	

- 현관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에 따라 시공 부위 및 규격, 특화 사항이 상이합니다.
- 신발살균기 및 디자인선반(조명) 설치 시, 해당 가구장 내 수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신발살균기 및 조명에 대한 전기 설비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신발살균기 및 디자인선반(조명) 전원 및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가구 조명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신발장 상단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수납특화

(단위 : 원)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1안	선택형(유상)-2안	금 액		비 고
복도 수납특화	전타입	미설치	복도 수납장 (조명포함)	62	890,000	-
				84A, 84B1/B2	1,400,000	
		복도 팬트리 : 여닫이도어 + 풀대형 시스템선반	복도 팬트리 특화 : 폴딩도어(양개) + 수납장(조명포함)	100A1/A2/A3/A4	2,390,000	
		복도 팬트리 : 여닫이도어 + 풀대형 시스템선반	복도 팬트리 특화 : 폴딩도어 + 수납장(조명포함)	100B	1,490,000	

- 복도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에 따라 시공 부위 및 규격, 특화 사항이 상이합니다.
- 84A, 84B1/B2 타입의 경우, 복도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침실3에 면하여 복도 수납장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침실3 내부 길이가 축소됩니다.
- 복도 수납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복도 수납장은 설치되지 않으며, 벽/바닥 마감재 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실크벽지 또는 시트판넬로 마감됩니다.
- 복도 가구 조명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수납장 상단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수납특화

(단위 : 원)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1안	선택형(유상)-2안	금 액		비 고
다용도실 수납특화	100A/B	습식 다용도실 (목창호 + 바닥 타일(300*300) + 손빨래수전 + ABS 천장재)	건식 다용도실 (폴딩도어 + 바닥 타일(600*600) + 수납장 + 천장 도배지)	100A1/A2/A3/A4, 100B	1,450,000	-

- 다용도실 수납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다용도실 진입부에 단차가 있으며, 다용도실 내부가 습식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견본주택 84A형 참조)
- 다용도실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다용도실 진입부 단차가 삭제되며, 세탁단을 제외한 다용도실 내부가 건식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견본주택 100A1/B형 참조)
- 다용도실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세탁단이 건식구간보다 낮게 설치되며, 이로 인해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옵션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용도실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별도의 손빨래수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전열교환기 설치로 인해 다용도실 천장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수납 가구의 색상, 규격, 하드웨어 등 상세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단위 : 원)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1안	선택형(유상)-2안	금 액		비 고
드레스룸 특화	84A/B, 100A	파우더장 + 가구도어(여닫이) + 풀대형 시스템선반	포켓도어 +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 + 천장형 제습기	84A, 84B1/B2	3,230,000	-
				100 A1/A2/A3/A4	3,520,000	
	100B	파우더장 + 가구도어(여닫이) + 풀대형 시스템선반	포켓도어 + 디자인 시스템선반/불박이장(조명포함) + 천장형 제습기	100B	3,750,000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	84A/B, 100A/B	미설치	설치	84A, 84B1/B2, 100A1/A2/A3/A4, 100B	830,000	드레스룸 특화 옵션과 중복 선택 불가

- 드레스룸 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선반 구성이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디자인 시스템선반은 조명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디자인 시스템선반은 조명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선반은 본 공사 시 제조사, 규격, 상세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 및 불박이장을 위한 전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드레스룸 스위치 회로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관련 조명기구 SPEC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은 천장형 제습기가 포함됩니다. (가야/KY-1005P)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는 별도 유상 선택 가능합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 전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침실/알파룸 수납특화

(단위 : 원)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1안	선택형(유상)-2안	금 액		비 고
알파룸 수납특화	62	알파룸	복도 팬트리(폴딩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 침실2 드레스룸(폴딩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62	2,630,000	-
침실2,3 수납특화	84A/B, 100A/B	미설치	침실2,3 매립형 불박이장	84A, 84B1/B2	2,530,000	-
				100 A1/A2/A3/A4	3,830,000	
				100B	2,800,000	

- 침실2,3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침실2 및 침실3의 가로폭 사이즈가 줄어들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2,3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의 규격, 상세,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2,3 매립형 불박이장의 길이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라이프업 키친

□ 주방 특화

(단위 : 원)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1안	선택형(유상)-2안	금액		비 고
주방 스타일링 특화	전타입	벽 : 타일(300*600) / 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싱크 수전 : 국산 주방 기본조명기구	벽/상판 : 세라믹타일 싱크 수전 : 외산(한스그로헤) 주방 특화조명기구 (슬림라인등 + 원통직부등 + 상부장 하부조명) 주방TV(13인치, AI음성인식)	62	3,250,000	-
				84A, 84B1/B2	3,690,000	
		벽 : 타일(300*600) / 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싱크 수전 : 국산 주방 기본조명기구	벽/상판 : 세라믹타일 싱크 수전 : 외산(한스그로헤) 주방 특화조명기구 (슬림라인등 + 식탁레일등 + 상부장 하부조명) 주방TV(13인치, AI음성인식)	100A1/A2/A3/A4	5,060,000	
				100B	5,080,000	
주방특화 (스타일링 특화 + 평면특화)	84	기본 평면	평면특화 : 아일랜드 장식장 주방 스타일링 특화	84A, 84B1/B2	5,840,000	주방 스타일링 특화 옵션과 중복 선택 불가
	100	기본 평면	평면특화 : 장식장 + 독립형 아일랜드 주방 스타일링 특화	100A1/A2/A3/A4	7,270,000	

		기본 평면	평면특화 : 장식장 + 주방 팬트리 특화 주방 스타일링 특화	100B	8,590,000	
--	--	-------	--------------------------------------	------	-----------	--

- 주방 스타일링 특화 및 주방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세라믹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 및 디자인 패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및 벽 마감재는 유상옵션 미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상부장 하부 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옵션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별로 특화 적용 부위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옵션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 및 스위치는 본공사 시 제조사, 형태, 색상, 규격, 디테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 수납장 상부에 점검구가 추가되거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옵션 선택형(2안)과 수납공간 구성이 상이하며, 타입에 따라 서랍재의 폭, 수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팝업 콘센트 설치 여부는 세대 타입별로 상이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콘센트 본체 및 전선이 하부장에 노출되며 하부장 수납공간이 간섭될 수 있습니다.
- 라이프업 스타일링 옵션의 [거실/침실 조명특화] 옵션 선택에 따른 스마트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 중 주방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 옵션에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라이프업 스타일링 옵션의 [거실/침실 조명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가 결정되며 주방 스타일링 특화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주방 특화조명기구류는 주방 조명의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식탁등의 경우 평면에 따라 디자인 차이가 있습니다.
- 주방TV 제품 설치 시 제품 작동에 필요한 전기/통신선들이 제품 후면에 노출됩니다.
- AI 음성인식 주방TV의 경우 각 세대별로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제어 및 음성인식이 가능하며(소비자가 별도 구축) 홈네트워크 연동(문열림, 세대현관 및 공동현관 확인 등)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및 주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절수기 일체형 싱크수전 (진명홈바스 / JMK 7200WS) 제품이 설치됩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및 주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외산 싱크수전 (한스그로헤 /#72800) 제품이 설치되고, 별도의 센서식 절수기가 설치됩니다.

□ 주방 냉장고장

(단위 : 원)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1안	선택형(유상)-2안	금 액	비 고
주방 냉장고장	전타입	냉장고 상부장 + 김치냉장고 상부장	3컬럼 패키지 냉장고 + 상부장 + 키큰장	5,250,000	냉장고 포함

- 기본 주방 냉장고장 선택 시 1개의 콘센트(2구)만 설치됩니다.
- 3컬럼 냉장고 패키지는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로 구성되며, **삼성전자 제품(RR40C7(8/9)95AP, RZ34C7(8/9)65AP, RQ34C7(8/9)45AP)**으로 설치됩니다.
(도어 좌우 변경에 따라 모델명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컬럼 냉장고 패키지는 글라스 마감의 새틴화이트 색상으로 설치됩니다.
- 3컬럼 냉장고 패키지의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3컬럼 냉장고 패키지의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4) 라이프업 바스

(단위 : 원)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1안	선택형(유상)-2안	금 액		비 고
욕실 특화 (욕실1/2)	전타입	벽 : 타일(300*600/국산) 바닥 : 타일(300*300/국산) 욕조 : 수납형 에이프런 (욕실2) 도기(세면대+양변기) : 국산	벽 : 대형타일(600*1,200/외산) 바닥 : 타일(300*600/외산) 욕조 : 측면 타일 마감 (욕실2) 도기(세면대+비데일체형 양변기) : 외산 수전, 액세서리, 샤워부스프레임(욕실1) 색상특화	62	3,790,000	
				84A, 84B1/B2	3,890,000	
				100A1/A2/A3/A4, 100B	3,890,000	
욕실복합환풍기 (욕실2)	전타입	미설치	1개소(욕실2)	전타입	650,000	

- 욕실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벽/바닥 타일의 나누기 및 상세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등 욕실 가구의 제조사, 색상, 규격, 형태 등 상세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배수구의 위치, 형태 및 규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특화 옵션 미선택 시 전자비데는 **욕실2** 1개소에 설치됩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국산 위생도기(대림비앤코)**, **국산 수전(대신건기산업)**, **국산 액세서리(진명홈바스)**가 설치됩니다.
- 욕실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외산 비데일체형양변기**, **세면대(파포니)**, **국산 수전 색상특화(대신건기산업)**, **국산 액세서리 색상특화(진명홈바스)**로 설치됩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선택형(2안) 선택 시 힘펠(FHD3-C150P MT)제품이 설치됩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선택형(2안)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 위치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인 경우에도 천장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가전 옵션 (유상)

□ 주방가전

(단위 : 원)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1안	선택형(유상)-2안	금 액		비 고
쿡탑	전타입	가스 3구	인덕션 3구 (일반형)	전타입	650,000	쿠쿠 CIR-FS301FB
			인덕션 3구 (고급형)	전타입	1,980,000	디트리쉬 DPI-4320B
미설치		일반형	전타입	450,000	LG전자 MZ385EBT1	
		고급형	전타입	850,000	LG전자 MZ941CLCAT	
식기세척기		미설치	일반형	전타입	1,100,000	삼성전자 DW80F73Y1UEW
			고급형	전타입	1,400,000	삼성전자 DW80F75K1UAP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 중 전기오븐과 식기세척기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차단기 및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 옵션 품목 미선택 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패널은 선택1(일반형)은 에센셜화이트, 선택2(고급형) 새틴화이트 색상으로 설치되며 패널 색상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주방가구 도어와 추가선택품목 가전(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패널 색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도어와 식기세척기(추가선택품목)의 상하단 마감라인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제조사	타입	선택	실내기 대수	설치장소	금액	비고
삼성전자	62	1안	2대	거실, 침실1	2,800,000	
		2안	3대	거실, 침실1, 침실2	4,100,000	
		3안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알파룸	5,400,000	알파룸 수납특화 미선택 시
	84A/B	1안	2대	거실, 침실1	3,200,000	
		2안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800,000	
	100A/B	1안	3대	거실, 침실1, 주방	4,600,000	
		2안	5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7,300,000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어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청 세대는 기본제공 2개소(거실, 침실1)인 매립형 냉매배관 및 침실1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감지기 위치, 조명기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침실1에는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되며 거실에는 냉매배관이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준공 이후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더라도 월패드에서 제어를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단위 : 원)

제조사	타입	선택	실내기 대수	설치장소	금액	비고
삼성전자	62	1안	2대	거실, 침실1	1,980,000	
		2안	3대	거실, 침실1, 침실2	2,960,000	

		3안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알파룸	3,940,000	알파룸 수납특화 미선택 시
	84A/B	1안	2대	거실, 침실1	1,980,000	
		2안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3,940,000	
	100A/B	1안	3대	거실, 침실1, 주방	2,960,000	
		2안	5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4,920,000	

- 시스템청정환기는 선택 옵션에 따른 설치 공간의 면적에 따라 공기 청정화 능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작동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하며, 개인별 소음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환기 디퓨저의 설치개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의 설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장비 1대당 무선 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소모품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옵션 선택 시, 각 실 시스템청정환기 콘센트가 시공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1) 계약의 체결 및 해제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 관련한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사업주체와 고객 간 계약이 진행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서 소요 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계약해제 또는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다만, 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선택품목 계약해제 시 계약금액(VAT 포함)의 10% 위약금이 부과되며, 추가선택품목 관련 자재 발주 또는 공사 착수(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이후 해제 시에는 실손해액 전액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되는 경우, 추가선택품목 계약도 함께 이전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시공 일정 관리 및 자재수급 등의 사유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2) 가격 및 세금

- 추가선택품목 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가격은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금액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기준에 따라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세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세율, 과세 여부 및 부과 시점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기준과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품 변경 가능성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성능·규격 등은 사업주체 기준, 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설치 및 사양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나 사양에 대해 교체·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충분히 타사 제품 및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에 대해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실물을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용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제품 특성상 소음, 진동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스위치, 온도조절기,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관련 감지기, 콘센트, 전기설비 등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으며,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평형별 추가선택품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하며, 각 평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등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됩니다.
- 각종 옵션 선택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추가선택품목 선택 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외 별도 판매되는 옵션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견본주택 미설치된 타입의 추가선택품목은 동일 평형의 견본주택 설치된 타입의 디자인이 적용되나, 형태·규격·사양 및 위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계좌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입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납입시기	계약 시	2026.03.18.	입주 시	계약금	수협은행	1010-2726-6665	신한자산신탁(주)
납입금액	공급금액의 10%	공급금액의 10%	공급금액의 80%	중도금,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금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중도금, 잔금 납부는 입주 시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기일까지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세대별 가상계좌 형태로 부여되며, 모계좌로 관리됩니다. 세대별 가상계좌는 공급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선납 시 선납에 따른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 생략 또는 표시(설치)된 우, 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조명기기(등기구) 사양 및 위치, 배선기구(스위치 및 콘센트)의 수량 및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설치 위치 및 수량이 결정됩니다.

	• 건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세대 내 전시용으로 설치된 간접조명은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연출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본공사 설치품목은 계약내용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분양홍보물	•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 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주동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인쇄물(카탈로그 등), 모형 및 홈페이지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차도, 녹지, 지하철, 도시철도(트램), 기타 공동주택/상업용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사업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 홍보물(카탈로그, 홈페이지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 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아배치시설 / 학교	• 초등학교는 인근 신영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배정 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는 영통중학교 2구역(태장중, 영통중, 영일중)에 해당되며, 학생들을 추첨 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배정 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는 관내 기존 학교에 배치 가능하며, 수원 관내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는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의거 평준화 지역의 배정 방법을 따릅니다. • 학생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통중학교는 망포동(영통중학교 3구역)으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구영통중학교 부지에는 새빛학교(가칭, 시각장애 전문 특수학교)와 경기도포츠건강공유학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소재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의3 나목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새빛학교(2027년 3월 개교 예정, 학교에서 약 182m에 위치)의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본 아파트 입주인 자녀 중 유아배치시설(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 대상 아동은 남부2권역 내 해당 시설에 배치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관할 교육당국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 본 공동주택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615세대로,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 단지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수원시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수원시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수원시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

	할 행정기관 및 관할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수원시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 수원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교육부의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추후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수원시와 사업주체 간의 협약을 통해 정해지는 비율 내에서 입주인 자녀에게 우선 입소 배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잔여 정원은 입주인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에게 입소 순위에 따라 배정되며, 개원 이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외부 차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경기도 수원시(경기도 수원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 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상기 안내 내용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변경된 법령·지침 등을 우선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집 내부 평면 계획, 입면 계획, 화장실 계획(대소변기 개수 변경 포함) 등이 운영자인 수원시의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615세대로, 본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55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수원시에서 해당 센터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제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해당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수원시와 체결할 예정이고,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해당 단지의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수원시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지역 돌봄수요 등을 고려할 때 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거나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해당 센터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수원시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수원시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 수원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인 자녀에게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 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인 자녀 우선 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입주인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소 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 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는 향후 경기도 수원시(경기도 수원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센터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및 사용료,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상기 안내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변경된 법령·지침 등을 우선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내부 평면 계획, 입면 계획, 화장실 계획(대소변기 개수 변경 포함) 등이 운영자인 수원시의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계 일반사항	• 본 아파트의 난방/온수는 지역 열원을 활용한 지역난방 방식으로 공급되며, 피트 위층 및 피트에 접한 세대와 최하층, 최상층 세대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주동 배치계획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동 및 층, 향, 세대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보조 공공보행통로 포함)는 입주인 외 일반인들의 24시간 통행,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출입, 통행의 제한을 둘 수 없으며, 일반인들의 이용에 따른 소음, 프라

	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지하철 출입구, 환풍구, 동탄도시철도(트램) 주차지 및 충전시설(예정) 등이 인접해 있어, 이용자 등으로부터의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레벨차이로 인해 주택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경사면 등이 설치되거나 옹벽 및 경사면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간섭,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사업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단차이가 발생하며 본 공사 시 “조경석 쌓기, 중력식옹벽, 자립식옹벽, 건축벽체노출” 등으로 선택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동탄도시철도(트램)의 공사 및 개통 시기, 운행노선, 운행 방법, 차량 사양,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규모, 위치, 형태 등은 해당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 동탄도시철도(트램)의 사업계획 상 망포역이 출발점(기점)으로 망포역 주변에 차량주차지, 충전시설, 정류장, 노면레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공사중 및 운행중 보행통제(우회), 소음, 진동, 분진, 경관저하, 전파간섭 등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동탄도시철도(트램)의 인접으로 인하여 부동산 및 정주환경의 변화 등 별도의 직,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DA, 한전인입시설 등의 돌출물은 실시설계 시 위치, 개소, 규격, 높이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상 2층에 위치한 MDF실, 방재실, 관리사무소 등은 레이아웃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나, 향후 지하 공영주차장 설치 등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부담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부담금은 전적으로 사업주체가 부담하며 계약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의 오수처리는 당초 정화조 없이 외부 배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지자체의 오수관로 일제 조사 결과 및 관계기관의 요구 또는 법령상 필요 등에 따라 정화조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하며, 계약자는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	• 일부 부대복리시설(골프클럽, 독서실 등)은 지하층에 위치하며 이용을 위해 수직동선(E/V, 계단실)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일부 상업시설 이용자와 동선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피트니스센터)은 실내의 기동 위치 변경으로 인해 공간 활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내에 위치한 화장실은 내부 레이아웃(대소변기 등 욕실 기기 위치와 수량 변경 포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그리너리 스튜디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면적변경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공용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은 현장 여건, 발생수요 등에 따라 일부 용도, 평면 계획, 마감재, 동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배기구가 보행자 통행로에 인접하여 별도 마감으로 차폐할 예정이나 비산먼지나 소음 등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배기구에 인접한 세대는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내운동시설은 외부에 부분적으로 커튼월록 마감을 적용하였으며, 인접 세대는 금속 프레임이나 유리에 의한 빛공해와 이용자들에 의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 외부에는 일부 커튼월록 마감과 수직 금속루버 마감, 경관조명 등이 계획되어 빛공해가 발생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법적기준 내)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실내운동시설 지붕에 판매시설용 냉각탑이 설치되고 각종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는 동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접 세대의 환경권,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각 실의 천장공간 내부가 인접실을 위한 배관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임의로 해당시설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상업시설 지붕에 판매시설 주방 배기를 위한 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냄새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은 지역난방을 이용한 난방전용 실내기와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급수, 급탕, 전력 등의 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등의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는 101, 103동은 지상2층 외부승강기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며, 102동은 해당동 승강기 및 연결브릿지를 통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어린이놀이터 접근을 위한 휠체어리프트가 101, 102동 연결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리프트 설치에 따른 시선험단 및 리프트 가동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의 활성화 및 이용촉진을 위해 외부 진입 계획(외부 계단, 복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화장실, 복도 등)의 변경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변경 없음) • 101동 3층 판매시설은 수원도시공사에 무상 이전될 예정입니다.
지하주차장	• 공동주택용 지하주차장은 지하 4층부터 지하 8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 2층은 상업시설 주차장과 지하 3층에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됩니다. • 지하 3층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원시 소유의 공영주차장으로 수원도시공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주차장으로, 공동주택 입주자(계약자 포함) 또는 상가 입점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차량 또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계약자 및 입주자는 공영주차장의 정기권 배정, 주차요금 감면, 우선 이용 등 운영 규정을 벗어나는 혜택을 수원시 또는 수원도시공사(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관련 민원 제기는 제한됩니다. • 지하 3층과 지하 4층을 연결하는 차량용 램프에는 지하 3층 및 지하 4층에 차량 출입 제어용 차단기가 설치되며, 해당 차단기는 공동주택 계약자가 관리 및 운영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 램프는 화재, 침수 등 비상 상황에서 공동주택 주차장 이용 차량의 긴급 대피를 위한 용도로 한정되며, 일상적인 이용 목적의 차단기 상시 개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불가피하게 해당 램프의 개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영주차장 운영자(예정: 수원도시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결과에 따른 개방 여부는 공영주차장 운영자의 재량에 따릅니다. • 공동주택 계약자는 주거시설 승강기와 계단을 이용해 지하 3층의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향후 공영주차장의 운영 방식, 유지관리 계획, 또는 수원시 및 수원도시공사의 관련 규정 변경 등에 따라 지하 3층 공영주차장 자체 또는 공영주차장을 경유한 망포역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용 불편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용 전기차 충전기기는 지하 4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열교환기실, 기계실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씩 지상 2층에 설치 예정이나 시공 등 제반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은 동별,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세대의 경우 택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천장)는 각종 배선, 배관 및 장비가 노출되어 시공되며, 일부는 부대시설을 위한 각종 전기, 배관, 배선 및 가스배관 등의 루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 세대로 전달될 수 있고,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한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수조, 펌프실 및 제연팬 등이 설치되어 기기 작동 시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소화전 위치는 법적 사항에 맞춰 그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주차면이 간섭되어 승, 하차 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 103동 저층세대는 주차 램프 구조물과 인접하여 출입 차량과 진출입 알림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빛공해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 102동 저층세대는 주차장 출입데크 및 경사로와 인접하여 소음 및 진동, 빛공해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 2층은 상업시설 전용, 지하 3층은 공영주차장 전용이며, 지하 4층~지하 8층은 공동주택 전용으로 층별 구분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 전용주차장은 지상 2층 주차장 입구를 통하여 출입 가능합니다. • 상업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은 단지 내 지상 1층 주차장 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며, 외부인의 출입에 따른 소음, 진동, 빛공해 및 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보관소는 지하 4층 각 동 인근에 계획되어 있으며, 생활폐기물 배출을 위한 동선 등 이용에는 각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보관소 위치에 따른 동 출입 시의 냄새, 수거차량과의 간섭 등 생활상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업시설 생활폐기물보관소는 지상 1층 102동 남측에 위치하여 있으며, 인접세대는 수거차량 소음, 분진 및 냄새 등 생활상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공동주택 계약자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하 3층 공영주차장에서 망포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이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국가철도공단, 수원시청 등 관계기관의 향후 인허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계획

	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3층 공영주차장과 망포역 대합실은 동일한 레벨에 위치하지 않으며, 경사로를 통해 이동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시간대에 따라 혼잡하거나 보행 동선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이용자와 입주자의 동선이 겹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지하철과 인접하여, 지하철 운행 시 발생하는 진동·소음 등으로 세대 내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역 연결통로는 지하 3층 공영주차장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수원에 무상귀속되고, 수원도시공사가 관리 예정입니다. 다만, 소유 및 운영 주체로부터 공동주택 계약자에 관리비 부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공보행통로	- 지상 1층 상업시설 내에 설치되는 남북 방향의 복도(101동과 102동 사이)는 「영통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보행통로로 계획된 공간이며, 현재 바닥면적은 약 351㎡로 계획되어 있고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2층부터 지상 1층까지 설치되는 남북 방향의 복도(102동과 103동 사이)는 보조 공공보행통로로 계획된 공간입니다. - 해당 공공보행통로(보조 공공보행통로 포함)는 입주민뿐 아니라 불특정 일반인의 24시간 통행 및 이용이 가능한 공공 개방 공간으로, 출입 및 통행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상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공보행통로(보조 공공보행통로 포함)의 면적 중 일부는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으로 산입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통로의 전기료, 청소비, 수선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상업시설 계약자(또는 입점자)가 각자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동탄도시철도(트램)	- 본 사업지 인근에는 '동탄 도시철도(트램)'(이하 '동탄트램')가 2029년 중에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동탄트램은 오산 ↔ 동탄SRT역 ↔ 망포역 노선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 기본계획상 본 사업지 북측에 동탄트램 정거장과 주차지가 연결하여 설치될 예정이나, 정거장 및 주차지의 위치, 규모, 형상 등은 향후 인허가 및 설계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정거장은 영통로 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박지에는 트램 차량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주차지에 정차할 예정이며, 운영 시간 중에도 회차, 점검, 정비 등을 위해 일시 정차될 수 있습니다. - 주박지에는 트램 차량 충전을 위한 지상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트램 운행 및 주차지 운영에 따라 차량 이동·회차·충전 등 과정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거장 및 주차지의 운영 시 조명, 경고등, 차량 내외부 조명 등으로 인해 야간 시간대 광공해(빛공해)가 일부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트램 관련 유지보수 차량 또는 운영 인력이 단지 인근을 통행하거나 작업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동탄트램 설치 사업은 지자체가 주관하는 별도 공공사업으로서 노선, 정거장 및 주차지의 계획은 변경,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단지와의 연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기관인 화성시 트램건설과 또는 수원시 첨단교통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동	- 주동 입면에 커튼월록 마감과 BIPV(건물 입면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계획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일부 세대는 금속프레임, 유리, 패널에 의한 빗공해나 소음, 진동, 마감 돌출로 인한 외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공용 태양광 패널이 주동(101동, 102동, 103동)의 옥상·지붕·입면, 주차장 진입 램프 지붕에 설치될 예정이며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시공 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용 패널 또는 모듈은 사업계획승인 발전 용량 이상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최종 선정된 제품의 효율 등 특성에 따라 그 수량이 증감될 수 있고,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측벽 포함)에 의장용 구조물,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이동통신설비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안면방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출입구의 경우 공공보행통로 및 상업시설과 인접하여 일부 동선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층세대는 각종 부대시설 출입구와 인접하고 돌출 구조물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가 있는 층의 주동 엘리베이터홀과 공용복도에는 자연 채광이 되는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가 있는 층의 엘리베이터홀 폭은 2.3~2.4M이고 공용복도의 폭은 1.2~1.8M이며, 일부 세대(101동 1호 84A타입, 102동 1호 100A3타입, 102동 4호 84B2타입, 103동 1호 라인 62타입)는 인접 세대의 현관문 개방 시 통행 가능 복도의 폭이 0.8M 이하여서 통행과 이삿짐 운반 등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층수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 침실은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됨) 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의 높이 및 사이즈와 태양광 패널의 크기 및 위치 등은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시설의 통합 시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사전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103동 지붕(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 상태에 따라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으로 이동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구 분		설치 위치
옥외안테나	옥상층	101동, 102동, 103동
	지상1층	근생, 판매 EPS/TPS (2개소)
중계장치	지하2층	근생, 판매 EPS/TPS (2개소)
	지하4층	공동주택 EPS/TPS (2개소)
	지하6층	공동주택 EPS/TPS (2개소)
	지하8층	공동주택 EPS/TPS (2개소)
	지하8층	공동주택 EPS/TPS (2개소)

- 아파트 옥상 및 측벽에 피뢰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동별,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 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평면구성에 따라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하여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1동 1호(84A), 101동 4호(100A2), 102동 1호(100A3), 102동 4호(84B2), 103동 1호(62), 103동 4호(100A4)의 경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하여 소음, 진동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출입구 근처/지상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시설물(D/A)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소방활동을 위한 소화수조, 펌프, 제연팬이 설치되고, 피난안전층에 펌프, 제연팬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기기 작동 시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내 정화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정화조 급배기 등 관련 설비가 정화조에 인접한 외부 및 주동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조경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 채광을 위한 탐라이트 등(설치 시)의 지상 돌출물이 각동 지상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 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부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근 인접한 건축물(현대프라자, 디지털엠파이어), 아파트 단지(망포역아이파크 등) 배치에 따라 일조, 조망, 채광 등의 침해 및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3동 1호 라인(62)과 103동 2호 라인(84B1)에 위치한 세대는 동측으로 건축물(디지털엠파이어)이 근접해 있어 20층 이하 세대는 조망 또는 시야가 인접 건축물에 의해 차단되거나 제한되며, 21층 이상의 세대도 인접 건축물로 인해 조망과 시야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102동 1호 라인(100A3), 102동 5호 라인(84A), 102동 6호 라인(84A), 101동 3호 라인(100A1), 101동 4호 라인(100A2)에 위치한 세대는 남측으로 건축물(현대프라자)이 근접해 있어 7층 이하 세대는 조망 또는 시야가 인접 건축물에 의해 차단되거나 제한되며, 8층 이상의 세대도 인접 건축물로 인해 조망과 시야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103동 2호 라인(84B1), 103동 3호 라인(84A)에 위치한 세대는 남측으로 건축물(단지 내 실내운동시설)이 근접해 있어 5층 이하 세대는 조망 또는 시야가 인접 건축물에 의해 차단되거나 제한되며, 6층 이상의 세대도 인접 건축물로 인해 조망과 시야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103동 2호 라인(84B1), 103동 3호 라인(84A)에 위치한 세대는 남측 실내운동시설 지붕층에 위치한 상업시설 등의 냉난방기 실외기 소음으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중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특히 저층부)는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주상복합 건물로서 지상 1층 및 2층에 상업시설과 공공보행통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 1·2층 옥외 공간은 상업시설 및 공공보행통로 이용자의 접근·이용이 허용되며, 해당 구역에는 공동주택 전용 경계물(울타리, 담장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 레벨 및 단지 내 도로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 대지와와의 레벨차이에 의해 단지 내 옹벽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차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구 1개소 및 상업시설 지하주차장 출입구 1개소를 통한 전체 지하주차이며, 단지 내에는 비상차량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사차량, 폐기물 수거차량 등 지상 이동 필요) • 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한 세대는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에 따라 소음 및 불빛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택배차량은 지하4층 주차장으로 접근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관리동, 주차램프, 외부승강기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D/A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 전기실 및 주차장, 급배기구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은 위치에 따라 주변 판매시설로 인해 소음, 악취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판매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장비(냉난방용 실외기, 배기팬, 냉각탑 등)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층부 인접세대에 소음, 분진 악취 및 미관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보행로, 단지 내·외 도로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인입용 한전패드(아파트 및 판매시설용), 전기인입 맨홀,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1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는 범죄예방 및 입주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설치되므로 설치 및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 조경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에 면해 있는 저층 녹지구간은 삭제 및 별도 마감 처리될 수 있으며, 관리를 위한 점검구, 난간 등이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는 미술품품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해당 비용이 본 사업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인허가 요건 등의 변화에 따라 설치 계획은 변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작품 내용·작가 선정 등은 향후 심의 및 계약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우수저류조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계약자이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본 단지는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일조 확보 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세대(거실 기준)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연속 2시간 또는 총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일조 조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관계 법령상 제한을 받지 않는 정당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한 세대별 일조 조건의 차이는 분양가 산정이나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계약자는 위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호 라인(전층), 101동 2호 라인(35층 이하), 101동 6호 라인(10층 이하), 102동 3~4호 라인(전층), 103동 1호 라인(16층 이하), 103동 5호 라인(전층), 103동 6호 라인(34층 이하)
단위 세대	공동	• 세대 내 전기기기,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위치 및 가구/선반의 배치, 주방 싱크대 수전위치, 현관문 도어의 방향은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84B1, 84B2타입과 100A1, 100A2, 100A3, 100A4의 차이는 주동 내 위치에 따른 발코니 서비스면적(침실1 발코니)의 차이이며, 이외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은 동일 전용

		면적 타입 내에서 동일합니다. • 20층 미만 세대 창호 중 1개소에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며, 세대별 설치 개소는 비상차량의 접근동선, 세대의 위치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타입별 동일한 위치의 창호이더라도, 소방관 진입창 설치 여부에 따라 창호의 분할 및 개폐면적 등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감재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흡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 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현관 전면에 계단실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으며 사용여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바닥, 아트월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아트월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추가선택품목)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특성 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등의 마감재는 가공 및 생산방식에 따라 견본주택과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강마루의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창호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인가(변경)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가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세대내부 가구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본 공사시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은 제조사, 형태, 색상,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도어와 추가선택품목 가전(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패널 색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도어와 식기세척기(추가선택품목)의 상하단 마감라인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배기로 인하여 소음, 진동 및 인접세대의 냄새 유입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 현장은 욕실배관이 해당 층 하부에 설치되는 층하배관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추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부세대 욕실 내 점검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 마감재 및 점검구 규격,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하부, 발코니 및 일부 싱크대 하부 공간 등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흡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사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 및 그릴은 사양, 규격, 열림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에는 물건 등을 적재할 경우 문제가 발생되며 당사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기 / 설비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Wall-Pad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조도 개선, 자재생산업체 부도 및 생산 중단 시 동등(자재단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안방 등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 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에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공동주택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CCTV 및 주차장 카메라는 공동주택의 방법 및 안전관리, 차량 통제 등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됩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분전반 등의 설치위치 및 사양,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 시공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최상층에 설치됩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AI음성인식 주방TV의 경우 세대별로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제어 및 음성인식이 가능하며, 인터넷 환경은 공동주택 계약자 또는 사용자가 본인의 부담으로 별도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홈네트워크 연동(문열림, 세대현관 및 공동현관 확인 등)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회사 제품의 문제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 합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 또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은 같은 제품일지라도 등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수전류, 약세서리 등의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유닛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복도 및 세대 전용공간의 천장 내부 또는 가구의 공간이 기계/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전체 지붕 우수 처리를 위해 공용복도 및 전용공간의 천장 내부로 우수관이 관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 공간이 수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재를 시공하지 않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인근 온도조절기(거실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현관, 현관 팬트리, 발코니, 욕조 하부, 샤워부스, 주방가구 하부 공간 등은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 하향식피난실 또는 발코니에 세대 환기장비가 설치되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장비는 가동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스프링클러헤드 및 직배기 설치를 위하여 거실 또는 침실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수납공간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점검구의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 내 설치되는 급수급탕 분배기 및 배관은 상부 세대용으로서, 상부 세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부세대 욕실 천장 내 점검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과 발코니는 비난방구간이며, 해당 구간에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배관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 루버는 필히 닫힘구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바닥배수구는 동절기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봉수 파괴로 냄새가 유입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물을 부어주는 등 입주자가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 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과열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가스배관은 단위세대 외벽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 설치에 따라 발코니, 실외기실 내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시공 중 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 옵션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되며,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쿡탑이 설치될 경우 주방 상판은 타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관의 위치, 수량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의 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배관으로 시공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일부 발코니에만 배수관 및 배수구가 설치됩니다. • 일부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완강기 설치로 인한 공간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임의 철거, 제거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세대에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의 환기를 위하여 환기장치가 추가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가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관리비용이 발생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홈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 3년간 무상서비스로 제공된 후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 환기, 쿡탑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 연계되는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과정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도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 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 시, 안드로이드 7.0 누가(Nougat)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부에 와이파이(Wi-fi) 환경을 계약자 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세대 내의 각 종 홈넷 기기의 제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의 연동은 당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주택법」 제48조의2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단,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30년 02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 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시니어클럽, 작은도서관(그리너리카페),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독서실(그리너리스튜디오), 어린이놀이터, 경비실, 실내운동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하자판정 기준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사항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해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Mock-up)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샘플하우스(Mock-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하기로 합니다.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시공자는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공용부 중 일부 공간을 AS센터(가칭) 및 다목적창고(하자보수/유지관리용 자재 등)로 유지관리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3항29의2)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4층 : 2.7m 지하2~3층, 지하5~8층 : 2.3m 이상	2.7m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구분	내진능력(MMI 등급)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204g)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 자료이며, 자재 수급 여건, 시공 여건 및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 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12025-101-0003300호	521,136,21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줍니다.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보증사고(조합사업비대출보증약관 또는 분양보증약관에 따른 보증사고를 말함)가 발생할 경우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기타 옵션은 분양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 기타 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66-9009)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수원 방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2. 신청자 : 방포역세권개발(주)(이하)

3.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080-10, 1104, 1105-1, 1105-2, 방포동677-31, 677-35, 677-31, 677-35, 677-35

4. 성능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위생안전 관련 성능	★
2. 주택구조 관련 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 성능	★★★★
4. 공동주택(도도, 보도)에 대한 실내 외 소음도	★★★★
5. 화상안전 관련 성능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내진성	★★
3. 내풍성(외풍, 내부풍)	★
4. 내화성(내화, 내연성)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친환경 건축재료 사용	★★★★
2. 친환경 자재 사용	★★★★
3. 친환경 자재 사용	★★★★
4. 친환경 자재 사용	★★★★
5. 친환경 자재 사용	★★★★
6. 친환경 자재 사용	★★★★
7. 친환경 자재 사용	★★★★
8. 친환경 자재 사용	★★★★
9. 친환경 자재 사용	★★★★
10. 친환경 자재 사용	★★★★
11. 친환경 자재 사용	★★★★
12. 친환경 자재 사용	★★★★
13. 친환경 자재 사용	★★★★
14. 친환경 자재 사용	★★★★
15. 친환경 자재 사용	★★★★
16. 친환경 자재 사용	★★★★
17. 친환경 자재 사용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수원 방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건축주 : 방포역세권개발(주)

건축(대지)면적 : 2030.05㎡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080-16, 1104, 1105-1, 1105-2, 방포동677-31, 677-35, 677-35

층 수 : 지하 2층, 지상 15층

면적 : 152,047.45㎡ (필지 면적 143,508.54㎡)

건축물 용도 : 복합(공동주택+업무건축물)

설계자 : (주)한길이앤씨

인용 개요

인증번호 : G-2025-P-2025-0653-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5.09.11 ~ 2026.09.11

인증대상 :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을 위한 예비인증

인증등급 : 우수(그린2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인증기준

1차인증기준 : 제 2023-27호, 환경부고시 제2023-57호

인증기준 : 환경부령 제2023-07-01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녹색건축(우수(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별첨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결과
에너지 효율성	92%
에너지 절감률	77%
에너지 절감률	94%
에너지 절감률	99%
에너지 절감률	97%
에너지 절감률	92%

종합등급 ★★★★★

2025년 07월 11일

한국부동산원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인증 후에 본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제현장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수원 방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주 소

건축물명 : 2030.05㎡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080-16, 1104, 1105-1, 1105-2, 방포동677-31, 677-35, 677-35

층 수 : 지하 2층, 지상 15층

면적 : 152,047.45㎡ (필지 면적 143,508.54㎡)

건축물 용도 : 복합(공동주택+업무건축물)

설계자 : (주)한길이앤씨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5-주-06-14-0084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5.09.11 ~ 2026.09.11

인증대상 :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을 위한 예비인증

인증등급 : 우수(그린2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인증기준

1차인증기준 : 제 2023-27호, 환경부고시 제2023-57호

인증기준 : 환경부령 제2023-07-01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녹색건축(우수(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별첨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결과
에너지 효율성	92%
에너지 절감률	77%
에너지 절감률	94%
에너지 절감률	99%
에너지 절감률	97%
에너지 절감률	92%

종합등급 ★★★★★

2025년 07월 11일

한국부동산원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인증 후에 본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제현장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단위: 원,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자)건축사사무소 태백	(주)케이제이종합감리	(주)한길이앤씨	(주)진광건설엔지니어링

감리금액	5,277,670,200원	767,695,600원	1,065,299,000원	253,000,000원
사업자등록번호	228-81-01566	127-86-12412	412-81-26027	135-81-18222

※ 감리금액은 계약 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망포역세권개발피에프비(주)	(주)대우건설	(주)대우건설
법인등록번호	134811-0665622	110111-2137895	110111-2137895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301호 (오산동, 동탄케이티엑스중앙파크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 본 아파트는 해당 사업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망포역세권개발피에프비 주식회사에서 시행·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 「본 사업은 시행자인 망포역세권개발피에프비 주식회사가 「주택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망포역세권개발피에프비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및 보존등기 상의 사업주체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망포역세권개발피에프비 주식회사로 명기될 예정입니다.
-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31 제1항 제8호」에 따라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분양수입금계좌, 추가선택품목 옵션대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포함)의 명의를 망포역세권개발피에프비 주식회사의 자금관리업무수탁사인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공급(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및 공급(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최근('25.06.30.)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반영된 참고 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2025년 08월 29일(금)
건본주택 오픈		2025년 08월 29일(금)
특별공급	신청	2025년 09월 08일(월)
일반공급	1순위 신청	2025년 09월 09일(화)
	2순위 신청	2025년 09월 10일(수)
당첨자발표		2025년 09월 18일(목)
사전 서류접수		2025년 09월 20일(토) ~ 2025년 09월 23일(화)
공급계약		2025년 09월 29일(월) ~ 2025년 10월 01일(수)

분양문의 031)206-1695

건본주택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922
홈페이지 : <https://www.prugio.com/hb/2025/mangpo/>

